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48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장철민 · 이재정 · 김주영
박정현 · 박용갑 · 황정아
오세희 · 백승아 · 김의겸
임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자금·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약기업”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 사업 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10절(제62조의14 및 제62조의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제62조의14(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소기업, 중기업 등 기업규모별 원활한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도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약기업의 선정·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도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시장·신시장 진출 전략 수립, 경영·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사업화, 마케팅, 해외진출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3. 자금 및 보증 등 금융 지원
4.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62조의15(도약기업 선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약지원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도약기업’이란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 사업 확장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1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10절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제62조의14(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소기업, 중기업 등 기업규모별 원활한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도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약기업의 선정·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도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략 수립, 경영·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사업화, 마케팅, 해외진출 등을 위한 바우처 지원

3. 자금 및 보증 등 금융 지원

4.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62조의15(도약기업 선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약지원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